

부산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나8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9. 16

판결선 고 2020. 10. 28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2. 12. 선고 2019가소3436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2007. 3. 22. C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 상품명 'D', 보험계약자 및 만기. 장해.사망수익자 원고, 피보험자 피고, 납입기간 20년, 월 납입보험료 53,6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7. 3. 22.부터 2015.7. 20.까지 월 납입보험료 53,600원을 1()1회에 걸쳐 납부하였다.

다. 2018. 4.경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만기·장해수익자가 원고에서 피고 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만기시 노후 생계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만기·장해수익자가원고에서 피고로 변경되었고,그로 인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5,36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5,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및 만기*장해수익자 변경이 피고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졌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없이 원고가 납부한 보험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오영두판사 김석수 판사 류승우